KB국민 체크카드회원 약관

제 1 조(회원)

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KB 국민카드(이하 "카드사"라 함)에 KB 국민체크카드 (이하 "카드"라 함)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.

제 2 조(카드의 관리)

-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의 배우자.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,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·관리하여야 합니다.
-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·대체·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,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 3 조(제수수료 및 보증금 등 징구)

- ①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와 관련하여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 등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카드사는 무선인식 비접촉식 기능(이하 "RF 기능"이라 함)이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보증금(이하 "보증금" 이라 함)을 징구할 수 있으며, 보증금은 회원의 카드 이용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(비밀번호 및 면책)

-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,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시 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,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



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③ 회원은 제 1 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제 5조(카드의 이용제한 및 정지)

-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- 1. 비밀번호의 입력횟수 초과
 - 2. 인출(이체)한도 또는 직불이용한도 초과
 - 3. 사고신고계좌
 - 4. 법적제한계좌
 - 5. 지급가능잔액(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) 부족
 - 6.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
- ② 교통기능 이용 등 일부 신용한도가 운영 되는 카드는 제 1 항 각호의 사유 외에 연체 (카드이용대금,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) 및 파산, 개인회생 신청 등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카드이용이 제한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(카드의 국내이용)

- ① 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②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 발급 시 통보합니다.
- ③ 온라인 마감·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 시 및 예금 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무승인 가맹점에서는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④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RF 기능이 있는 카드를 발급 받아 교통기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⑤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별도의 기준을 통과한 회원에 한하여, 회원의 요청시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(최고 30 만원) 내에서 소액신용결제 한도를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, 부여된 한도는 한도 부여시 통보하여 드립니다.
- ⑥ 회원은 이용대금이 제 1 항의 예금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5 항의 소액신용결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(카드의 해외이용)

- 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 직불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제 1 항의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의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로 현금(외화)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원은 전 각 항의 이용 시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인출 및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④ 카드의 해외이용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(현금카드기능 이용)

- ① 회원은 국민은행 계좌 또는 카드사가 인정하는 제휴기관의 계좌(현금카드 기능 사용이 가능한 계좌에 한함)에 대하여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경우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현금카드기능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좌 개설기관의 현금카드 관련 약관에 따릅니다.

제 9 조(대금결제)

-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출금 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. 단, 체크카드 RF기능 이용으로 인한 RF이용 대금(교통이용대금 등)은 월 2회(매월 15일과 말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날) 출금되며, KB저축은행 제휴체크카드의 RF이용대금(교통이용대금 등)은 월 1회(매월 결제일)에 출금됩니다.
- ② 위 제 1 항의 기일에 교통이용대금 등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출금기준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*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**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출금기준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.
- * 연체이자 산정 시 출금기준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
- ** 지연배상금 = (연체금액-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)×연체이율×연체일수/365
- ③ 회원은 소액신용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카드를 이용한 경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 대금결제일은 카드사가 정한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④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 대금 (제 수수료 포함)은 마스터/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, 거래유형별로 승인거래(일반가맹점 및 ATM 사용시)의 경우 카드사용시점의 국민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, 미승인 및 T&E 업종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.

*T&E 업종: Travel and Entertainment 업종, 여행과 여가 관련 업종(항공,호텔,숙박, 렌터카 외)

제 10 조(약관변경 승인)

-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,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.
 - 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 권고(명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
 - 2.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
 - 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
 - 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
-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(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)까지 홈페이지 게시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, 팩스(FAX),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.
 - 1. 각종 요율, 수수료,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
 - 2. 결제방법, 소액신용한도 관련 대금결제일
-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·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 11 조(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,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